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석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646

발의연월일: 2022. 2. 3.

발 의 자 : 홍석준 • 구자근 • 김석기

김성원 · 김예지 · 김은혜

김정재 • 류성걸 • 송언석

윤창현 · 조명희 · 추경호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연고자 없이 사망하는 무연고사망자가 증가함에 따라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통해 무연고사망자에 대한 공영장례를 지원하고 있음. 하지만,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근거가 없어 실제로 조례를 제정하여 무연고사망자의 장례를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일부에불과한 실정임. 한편, 연고자가 없는 사람이 생전에 본인의 장례를 준비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연고자가 아닌 사람이 장례를 주관할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무연고사망자가 생전에 희망한 방식으로 장례를 치르는데 한계가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연고사망자에 대한 장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무연고사망자가 사망하기 전에 장례를 주관하는 사람이나 단체를 지정한 경우 시장등은 그 사람이나 단체로 하여금 장례를 주관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3 신설).

법률 제 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에 제1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3(무연고사망자 장례지원 등) ① 시장등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연고사망자에 대한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 ② 무연고사망자가 사망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례를 주관하는 사람이나 단체를 지정한 경우 시장등은 그 사람이 나 단체로 하여금 장례를 주관하게 할 수 있다.
- ③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장례 지원에 관한 업무를 민간기관 및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2조의3(무연고사망자 장례지원 등) ① 시장등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연고사망자에 대한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무연고사망자가 사망하기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례를 주관하는 사람이나 단체를 지정한 경우 시장등은 그 사람이나 단체로 하여금 장례를 주관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장례 지원에 관한 업무를 민간기관 및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있다.